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4. 9. 8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8월 30일

○ 회부일자 : 1994년 8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10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94. 9. 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박 경 국)

가. 제안이유

- 도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장애 또는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장애 또는 상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원 상해등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 의원 상해등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 회의구성 및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노 재 청)

-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상금 지급대상에 있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기타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로 하고

둘째,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동급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하고,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게 하는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의원 상해등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과 보상심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으로는 의회의원중 1인, 도본청 관련실·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사청주, 총주의료원장중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의회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질병, 상해, 장애, 사망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참석 : 7명, 찬성 : 7명)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